

# 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의원	김 영 해 의원
답 변 자	평창군수(건설과장)	답변일자	2003. 9. 25

## 질문요지

- 황계 8·9리 수해상습침수지역 폐천부지 용도폐지 불하건과 관련  
(루사피해시 개별추진 건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)
- 전반적인 일반현황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, 향후 추진계획,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일정별 부진사유를 상세하게 포함하여 답변 바람.
- 지금까지 해당업무 관리자 조서를 기재하여 답변 바람.

## 답변내용

- 김영해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도암면 황계8·9리 수해침수지역내 소하천 용도폐지 불하건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
-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해당필지는 도암면 황계리 661-139번지(하천)외 17필지 4,836㎡이며 세부 분할필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
- 분할필지현황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비고
계				4,836						
1	도암면 황계리	661-139	하천	394	10	도암면 황계리	661-165	하천	34	
2	"	661-157	"	35	11	"	661-166	"	701	
3	"	661-158	"	249	12	"	661-167	"	347	
4	"	661-159	"	974	13	"	661-168	"	611	
5	"	661-160	"	292	14	"	661-169	"	126	
6	"	661-161	"	105	15	"	661-170	"	150	
7	"	661-162	"	182	16	"	661-171	"	99	
8	"	661-163	"	262	17	"	661-172	"	6	
9	"	661-164	"	77	18	"	661-173	"	192	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의원	김 영 해 의원
답 변 자	평창군수(건설과장)	답변일자	2003. 9. 25
<p>○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할측량 수수료 교부 신청 : 군 → 강원도(2002.9.17)</li> <li>- 분할측량 수수료 교부 : 강원도 → 군(2002.10.30)</li> <li>- 분할측량 의뢰 : 군→ 지적공사 평창군출장소 (2002.12.24)</li> <li>- 분할측량결과 통보 : 지적공사→ 군(2003.5.7)</li> <li>- 토지분할협의의뢰 : 건설과→ 민원봉사과(2003.5.12)</li> <li>- 국유재산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대상여부 검토(소하천정비법시행령제16조관련)</li> </ul> <p>※ 본 필지는 횡계도시계획구간내로 향후 사업계획등 전반적인 검토와 차항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결정</p> <p>○ 향후 추진계획으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유재산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32조(용도폐지)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결정후 총괄청에 인수인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.(건설과→ 재무과)</li> </ul> <p>○ 해당업무 관리자조서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.2.11~2002.11.6일까지는 지방행정6급 여정은이며,</li> <li>- 2002.11.6~현재까지는 지방토목8급 홍성군임을 알려드립니다</li> </ul>			